

문서번호 : 한국영상보안 제26-109호

시행일자 : 2026. 8. 12.

수 신 : 조합원사 대표이사

참 조 :

제 목 : [기후에너지환경부] '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비산배출시설 지도·점검' 안내

선 램			지 시	
접 수	일자	. .	결 재	
	번호			
처리부서			공 람	
담 당 자				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기후에너지환경부 '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비산배출시설 지도·점검' 안내 요청 관련입니다.

3.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*대상 사업장의 적정 신고를 유도하고,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비산배출시설 지도·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*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

4. 지도·점검에 앞서 '신고 안내 기간('26.8.~10.)'을 운영할 예정이오니,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비산배출시설 지도·점검 추진계획

2. [별표의 9의2]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(38조의2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)

※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(www.cctv.or.kr)-알림마당-공지사항 게시물 참조

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이사장

